

“ 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 ”



한국건설자원협회

수신자 각 지회장 및 대표이사

(경유)

참 조

제 목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


1.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부과 시 구체적인 산정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이 개정·공포(대통령령 제33775호, '23.9.27)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과징금 산정 시 매출액의 5% 이내(최대 2억원 이하)에서 부과토록 하는 내용으로 「건설폐기물법」이 개정('23.3.28)됨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

2. 참고로 우리 협회는 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환경오염과 관련 없는 단순·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완화 방안(1차 : 영업정지→경고) 등을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주요 개정내용

○ (과징금 부과기준) 부과연도의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

구분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
부과기준	매출액의 2/100	매출액의 3/100	매출액의 5/100

※ 영업정지 대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

○ (예외기준 마련) 영업실적이 없거나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훼손되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(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)

○ (시행일) '23.9.29

붙임 : 「건설폐기물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3775호) 1부. 끝.

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



공석
담 당 권병문 부 장 연차 본부장 사무총장 연차 회 장 박하준

협조자

시 행 정책기획 - 508호 (2023.9.27) 접수

우 0675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27길 2(일동제약빌딩 3층) / www.koras.org

전화 02-3476-7787 전송 02-3476-8464 /koras01@naver.com / 공개